

## 일반 논문

## 자발과 강제 사이에서\*

- 1950년대 북한 농업협동화의 과정과 성격 -

조수룡 (국사편찬위원회)

## 국문요약

본 연구는 평양 주재 소련대사관에서 작성한 북한 농업 관련 각종 보고서와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1950년대 북한 농업협동화 과정을 재조명하였다. 특히 북한에서 집단화가 유례없이 신속하게 추진된 배경과 그 성격에 주목하였다. 이는 집단화에서의 자발적 또는 강제적 측면과 관련이 있다. 1954년 여름부터 농업협동화의 이른바 '대중적 단계'가 시작되었다. 산업화에 필요한 농촌 노동력과 배급 식량의 안정적 확보가 목적이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자원성의 원칙'을 강조하였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강제적으로 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하게 된 중농과 부농은 보유한 역축을 도살하거나 매각했다. 식량 위기에 봉착한 조선로동당은 1955년 하반기부터 농업협동조합의 양적 성장을 제한하는 조정을 가졌지만 이내 급진적 정책으로 회귀하였다. 1956년 8~9월의 정치적 위기를 거치며 당내 비주류가 제거되고, 소련과의 관계가 재조정된 이후에야 협동화는 내외의 잡음 없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었다. 북한에서 농업협동화는 프레오브라젠스키의 '사회주의 원시축적이론'을 따라, 산업화 자금 마련을 위해 부농과 중농을 수탈한다는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 이 연구는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전후 북한의 사회주의 이행과 '자력갱생' 경제의 형성」(경희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8) 중 제2장 제4절과 제3장 제3·4절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주제어: 북한, 농업협동화, 농업협동조합, 역축 도살, 식량 위기, 산업화

## I. 머리말

북한에서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의 이행은 크게 두 단계를 거친 것으로 이해된다. 첫 번째 단계는 1946년에 시행된 토지개혁과 중요산업의 국유화 조치였다. 이를 통해 봉건적 소유관계가 청산되었고, 사회주의 이행을 위한 조건이 마련되었다. 이른바 인민민주주의 혁명의 첫 번째 단계였다. 두 번째 단계는 정전 후 진행된 농업 및 개인상공업의 협동화였다. 이후 모든 경제 부문에서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로의 이행이 완성되었다. 이를 인민민주주의의 두 번째 단계, 즉 사회주의 혁명 단계라고 부른다. 북한 역사에서 사회주의 과도기는 인민민주주의 시기 전체를 상정하는 것이지만, 좁은 의미에서 사회주의 개조는 이 두 번째 시기에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개조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다름 아닌 농업협동화였다. 따라서 농업협동화의 여러 측면을 이해하는 것은 북한 사회주의 체제 이행과 그 특징을 밝히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북한의 농업협동화와 관련해서는 김성보와<sup>1)</sup> 서동만의<sup>2)</sup>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농업협동화를 둘러싼 당내 이론적 논의에서부터 정책의 수립과 집행, 그리고 이에 대한 농민의 대응과 같은 내용이 밝혀졌다. 이 외에도 농업협동화와 식량 생산 문제,<sup>3)</sup> 협동화 시기 농촌 사회의 재

1) 김성보, 『남북한 경제구조의 기원과 전개: 북한 농업체제의 형성을 중심으로』 (서울: 역사비평사, 2000).

2)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61』 (서울: 선인, 2006).

3) 이주철, 「1950년대 북한 농업협동화의 곡물 생산성과 연구」, 『韓國史學報』 31

편 양상,<sup>4)</sup> 중국과의 비교,<sup>5)</sup> 개인 상공업과 어업 분야의 사회주의화<sup>6)</sup> 등을 다룬 연구가 이어졌다. 이들 연구는 농업협동화의 전개 과정과 다양한 양상을 밝히는 데 기여했지만, 주로 북한의 공식 간행 자료에 의존했기 때문에 정책 결정의 과정과 의도, 추진 과정에서의 내부적 논의 등에 대해서는 추측 이상의 논의를 진전시키기 어려웠다.

특히 농업협동화(집단화)의 성격, 즉 빈농 중심의 자발적 협동화였는지 아니면 부농과 중농에 대한 강제적 협동화였는지는 동유럽과 아시아에서의 인민민주주의 경험과 관련한 중요한 쟁점이다.<sup>7)</sup> 북한의 경우에는 관련 논의가 크게 부족한 형편이다. 김성보는 빈농 중심의 자발적 협

권 (2008); 조수룡, 「북한의 전후 복구 3개년계획(1954-56) 수정과 1955년 봄 식량 위기」,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7집 (2018).

- 4) 장미성, 「농업협동화 시기 농민의 일상과 내면 연구: 전후 1950년대 북한 소설을 중심으로」, 『學林』 30집 (2009); 이준희, 「1950년대 '신해방지구' 개성의 농업협동화: 10월농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37호 (2017); 권태상, 「북한의 농업협동화 시기 국가·마을 관계 연구」, 『통일문제연구』 제29권 2호 (2017); 서홍석, 「북한 농업협동화 시기 제대군인의 활동과 농업협동조합의 공고화」, 『한국사학보』 74집 (2019).
- 5) 김영희, 「중국과 북한의 농업집단화에 대한 비교 고찰」, 『한중인문학연구』 35호 (2012).
- 6) 정진아, 「사회주의가 북한 어민의 풍습과 노동관행에 미친 영향」, 『사학연구』 118집 (2015); 조수룡, 「정전 후 북한의 사회주의 개조와 민간 상업의 몰락」, 『역사비평』 127호 (2019); 이준희, 「1950년대 북한의 사회주의 상업과 '육심상점」, 『민족문화연구』 85권 (2019).
- 7) 한 연구는 소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유럽과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의 농업집단화도 정치적, 심리적 강압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고, 농촌 주민들에 대한 폭력적인 수단이 동원되기도 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폴란드와 유고슬라비아는 집단화에 실패하여 소규모 개인농이 지배적 형태를 유지하였으며, 헝가리는 집단화의 추진과 후퇴를 반복하며 10년이 넘게 걸리는가 하면, 자본주의 농업을 경험한 이후 1970년대 말 집단화를 추진한 남베트남에서는 집단화가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진승권, 『사회주의, 탈사회주의, 그리고 농업: 동유럽과 아시아에서의 농업의 집단화』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6), 15~16·95·181쪽.

동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였다.<sup>8)</sup> 서동만은 농업협동화가 빈농, 전재민, 전쟁 유가족, 군인 가족 등의 호응에 기반한 대중운동으로 전개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조선로동당은 중농층을 가입시키기 위한 차별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음을 지적하였다.<sup>9)</sup>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이 시기 횡행한 역축의 도살, 1950년대 내내 도시와 농촌에서 만연한 식량난, ‘배천바람’과 같은 협동조합 탈퇴운동과 같은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협동화 정책의 반응 또는 역효과가 어떤 이유에서 발생하였으며, 당국은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는지 등의 내용을 밝히지 못한다면 당시 농업협동화의 과정과 성격을 충분히 이해했다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소련대사관에서 작성한 북한의 농업 관련 각종 보고서와 대사관 직원들의 일지를 활용하여 북한 농업협동화의 실제 양상과 성격에 대해 한 걸음 더 나아간 설명을 제시하고자 한다. 러시아연방대외정책문서보관소(АВІРФ)와 러시아국립현대사문서보관소(РГАНИ)에서 발굴된 이들 자료에는 북한 국가계획위원회 중앙통계국에서 작성한 여러 내부 통계가 인용되어 있다. 기존 연구는 북한 당국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선별·가공한 통계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북한 농업의 실제 조건과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따랐다. 새로운 통계자료의 이용은 당시 북한 경제의 실태를 명확히 밝히고, 농업협동화 및 사회주의 개조 정책의 의도와 결과를 보다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8) 김성보, 『남북한 경제구조의 기원과 전개』, 307~313쪽

9)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685~690쪽.

## II. 경험적 단계와 농업협동화의 개시

알려진 것처럼 북한에서 농업협동화가 처음으로 제기된 것은 1953년 8월 제6차 전원회의에서였다. 회의 결정서는 전체 농가의 30%에 달하는 빈농의 생활 향상에 대한 대책으로 (ㄱ)빈농민 일부를 토지가 많은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공업·국영농목장에 받아들일 것, (ㄴ)협동적 농업생산 합작사를 광범히 조직하고 1954년부터 일부 경험적으로 운영할 것을 결정하였다.<sup>10)</sup> 이 결정은 향후 본격적인 농업협동화를 위한 준비 작업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북한 측 연구에 따르면 제6차 전원회의가 열리기 이전 시점에 이미 농업협동조합의 맹아라고 부를만한 초보적 형태의 조직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표 1〉 농업협동조합의 지역별 분포, 1953년 7월

| 평양 | 평남 | 평북 | 자강 | 황해 | 강원 | 함남 | 함북 | 개성 | 계   |
|----|----|----|----|----|----|----|----|----|-----|
| -  | 7  | 32 | 10 | 12 | 80 | 24 | 9  | -  | 174 |

자료: 홍달선, 「공화국 북반부 농촌 경리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 과학원경제법학연구소 편,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경제건설(논문집)』(평양: 과학원출판사, 1958), 219쪽.

〈표 1〉에 나타난 농업협동조합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평안북도, 강원도, 함경남도의 조합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평북의 소겨리·포앗이 조직, 강원도의 전선공동작업대, 함남의 부업생산협동조합을 기초로 농업협동조합이 발전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1953

<sup>10)</sup>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이하 『사료집』) 30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8), 369-370쪽.

년 12월 현재 북한의 총 농가 수가 105만 호에 달했던 사실을 고려하면 2,400여 호를 망라한 174개의 농업협동조합은 유의미한 숫자라고 보기 어렵다.<sup>11)</sup> 이와 같은 토대 위에 농업협동화를 추진하자는 것은 당 주류로서도 하기 어려운 주장이었다.

제6차 전원회의에서도 협동조합은 1954년부터 경험적으로 운영한다고 결정하였기 때문에, 1953년에는 조합 수의 증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소련 대사관은 1954년 1월 1일 현재 농업협동조합의 수를 436개소로 파악하였다.<sup>12)</sup> 1953년 12월 8일 당 정치위원회에서 김일성은 다시 한 번 농업협동화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적들이 ‘꼴호즈’를 조직한다고 떠들어댈’ 수 있지만, “농업협동화를 뒤로 미룰 수는 없”다고 발언하였다.<sup>13)</sup> 당시 연안계의 주장이었다고 생각되는 ‘반제통일전선의 실현을 위한 농업협동화의 유예’ 논의를 의식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농업협동화운동은 1954년 1월 14일에 나온 당중앙위원회 지시 「농업협동경리 조직문제에 대하여」에서 사실상 출발하였다. 1953년 12월 8일 정치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이 문서는 기존에 방침으로만 존재하던 것을 구체적 실행에 옮기도록 처음으로 지시한 것이다. 이 지시를 통해 농업협동조합의 조직·운영의 기본원칙과 세 가지 기본 형태가

11) 홍달선, 「공화국 북반부 농촌 경리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 218~219쪽; АВІРФ, ф. 0102, оп. 9, п. 49, д. 57,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е положение КНДР(Справка, декабрь 1953 г.), л. 141.

12) АВІРФ, ф. 0102, оп. 10, п. 58, д. 50, Сельское хозяйство КНДР, л. 246. 서동만은 1953년 말 현재 806개의 농업협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었다는 북한 측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는 1954년 4월 당시 박창옥이 제시한 숫자를 소급 적용한 것이라고 보았다. 소련 대사관 측 자료를 통해 그의 추정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다.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660-661쪽.

13) 김일성, 「전후인민경제복구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할데 대하여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한 결론 1953년 12월 8일」, 『김일성전집』 1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244~245쪽.

처음 제시되었다고 알려졌지만, 문서가 직접 확인된 적은 없다. 최근에 러시아국립현대사문서보관소에 소장된 자료 중에서 이 지시가 발견되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sup>14)</sup>

「농업 협동경리 조직문제에 대하여」는 이미 농민들에게서 “협동경리에 대한 욕망이 각종 형태로 표현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엄정한 자원적 원칙에 기초”하여 경험적으로 협동조합을 조직할 것을 지시하였다. 전문(前文)과 조직원칙에서 “자원적 원칙”, “사소한 강박이나 강요도 용허하지 말 것”을 강조하였다. 당 내부의 우려를 무릅쓰고 추진된 만큼 농민의 비협조를 의식한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이었다.

지시의 내용은 크게 “농업 협동경리의 세 가지 형태”와 “농업 협동경리의 조직원칙”의 두 장으로 나뉘었다. ‘3형태 구분’은 알려진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sup>15)</sup> ‘조직원칙’은 대체로 1) 자원성에 기초한 임의가입과 임의탈퇴, 2) 소유권과 상속권, 4) 통상 10정보 이상으로 할 것 5) 민주주의적 조직 원칙, 6) 수확고와 수익성의 제고, 8) 좌우경적 경향에 대한 경계, 9) 점진적 원칙에 의거 각 군에 2~3개 조직, 11) 실정에 부합한 융통성 있는 실시 등을 규정하였다. 그 중 주목되는 내용은 8항과 9항이다.

먼저 8항에서는 협동조합 조직에서 단번에 광범위하게 조직하려고 하거나 소극적 태도를 취하는 경향을 좌우경적인 것으로 각각 지적하였다. 특히 우경적 경향에 대해서는 협동경영이 “농업의 사회주의화로 나아가는 과도적 형태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며, “그것이 사회주의적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였다.<sup>16)</sup> 협동조합의 경험적 조직이 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한 첫 단계임을 분명히 한 것이

14) РГАНИ, ф. 5, оп. 28, д. 190, лл. 87-90.

15) 협동경영의 3형태 구분과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김성보, 『남북한 경제구조의 기원과 전개』, 307~313쪽.

16) РГАНИ, ф. 5, оп. 28, д. 190, лл. 89-90.

다. 당내에서 아직 사회주의 개조 일정에 대해 공식적인 논의가 없던 상황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농민에게 직접 교육하도록 지시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농업 개인경영이 오랜 시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 제6차 전원회의 결정과는 달리,<sup>17)</sup> 곧 강력한 협동화 드라이브가 걸릴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9항에서는 협동조합을 이미 조직된 것까지 포함하여 각 군에 2~3개 정도로만 조직하도록 규정하였다.<sup>18)</sup> 제한된 수의 협동조합을 공고·발전시킴으로써 개인농민에게 그 우월성을 보여주도록 한 것인데, 경험적 단계의 조직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1954년 2월 12일 당 정치위원회는 국영 및 집단농장의 조직 경험을 배우기 위해 25~30명의 농민대표단을 소련에 파견할 것을 결정하였다. 6월부터 3개월 동안 이들은 농기계과학연구소, 농업과학아카데미, ‘콜호즈 카가노비치’, ‘콜호즈 스탈린’ 등 소련 각지의 농장과 농업 관련 기관을 견학하였다.<sup>19)</sup> 핵심 실무 인력들의 경험 축적이라는 목적 외에도, 곧 전면적인 협동화로의 돌입이 준비되고 있음을 소련 측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농기계임경소·우마임경소에 의한 우선적 기경, 우량종자의 우선적 교환, 종돈·가금류의 우선적 분양, 경지 확장에 대한 우선적 원조, 영농자금의 우선적 용자, 생필품·공업제품의 직접 공급과 같은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각종 우대 대책이 취해졌다.<sup>20)</sup> 이는 실질적으로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우대, 바꿔 말하면 개인농에 대한 차별 정책으로, 빈

17) 『사료집』 30, 370쪽.

18) РГАНИ, ф. 5, оп. 28, д. 190, л. 90.

19) АВПРФ, ф. 0102, оп. 10, п. 52, д. 8, лл. 37-41; РГАНИ, ф. 5, оп. 28, д. 189, лл. 4-7.

20)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연감』 1954~55년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4), 63~64쪽.

농의 조합 가입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였다. 자가 소비량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빈농 계층이 전체 농가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우대는 이들에게 좋은 유인책이었다. 특히 정전 후 식량 사정이 오히려 나빠지고 있던 1954~55년 시기, 빈농들은 정부가 농업협동조합을 도와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가입하였다.<sup>21)</sup>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적극적인 우대책이 취해졌음에도 불구하고 1954년 봄까지는 '경험적 단계'라는 원칙이 대체로 지켜졌다. 소련 대사관의 보고에 따르면 5월 31일 현재 협동조합의 숫자는 1,090개소였다.<sup>22)</sup> 당시 군(郡)의 숫자가 187개였으므로 각 군에 2~3개소의 협동조합을 조직한다는 원칙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자원성에 기초한 임의가입 원칙도 대체로 지켜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협동조합에 포함된 19,912가구 중 빈농은 17,653가구(88.6%), 중농은 1,776가구(8.8%)를 차지하였다.

그 중 중농은 대체로 전후 다수확으로 훈장이나 메달을 수여 받은 이른바 '모범농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황해북도 당위원장 허빈에 따르면 이들 대다수는 토지개혁으로 토지를 분배받은 옛 고용농과 빈농 출신으로, 당조직과 지방인민위원회가 이들을 대상으로 많은 해설 사업을 전개한 결과, 농업협동조합의 최초 조직자가 되었다. 이 시기 농업협동조합

<sup>21)</sup> АВПРФ, ф. 0102, оп. 11, п. 60, д. 8, лл. 135-139. 국가계획위원회 중앙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1953년 12월 현재 빈농으로 분류된 0.5정보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농가(1그룹)는 전체의 33.2%를 차지하였다. 이들은 필요량의 16.3%에 해당하는 곡물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보다 나은 2그룹은 0.5~0.99정보의 토지를 소유한 농가로, 전체의 39.7%를 차지하였고, 10.3%의 잉여 곡물을 생산할 수 있었다. АВПРФ, ф. 0102, оп. 9, п. 49, д. 57,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е положение КНДР(Справка, декабрь 1953 г.), лл. 141-143.

<sup>22)</sup> 이는 농업협동조합과 부업생산협동조합을 합한 숫자이다. 제2형태의 농업협동조합이 409개, 제3형태가 589개, 부업생산협동조합(축산업 또는 양잠업)이 92개였다. АВПРФ, ф. 0102, оп. 10, п. 58, д. 50, Сельское хозяйство КНДР(Справка, Сентябрь, 1954 г.), лл. 248-249.

이 빈농 중심으로 조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한 경지 면적이 총 경지면적의 1.7%(31,698정보)로, 농가 수 비율(2%)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은 이들 ‘모범농민’이 대거 참여하였기 때문일 것이다.<sup>23)</sup>

### Ⅲ. 급진적 산업화 노선과 농업협동화의 전면화

〈표 2〉에 나타난 것처럼, 농업협동화의 속도는 1954년 여름부터 급격히 빨라졌다. 6~7월에 이미 30명의 당 중앙위원회 간부가 각 지역에 파견되었다. 조직된 농업협동조합의 실태 조사가 명목이었지만 이때부터 조합의 대중적 확대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전원회의를 앞둔 10월에도 중앙 및 도·시·군 간부로 구성된 지도그룹이 조직되어 각지로 파견되었다.<sup>24)</sup> 조합 수는 11월 1일 현재 4,521개를 기록하였는데, 12월 11일 박창옥은 소련 임시대리대사 페트로프(A. M. Петров)에게 현재 협동화된 농민의 수가 전체의 30%를 초과하였다고 언급하였다.<sup>25)</sup> 그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한 달여 동안 조합의 수는 두 배 이상, 5천여 개가 증가한 것이다. 농업협동화의 대중적 단계는 흔히 1954년 11월 전원회의를 계기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지만,<sup>26)</sup> 실제로는 이미 그해 여름부터 대중적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다.

23) AVПPФ, ф. 0102, оп. 11, п. 60, д. 8, лл. 135-139; AVПPФ, ф. 0102, оп. 10, п. 58, д. 50, Сельское хозяйство КНДР(Справка, Сентябрь, 1954 г.), л. 250.

24) AVПPФ, ф. 0102, оп. 10, п. 52, д. 9, лл. 83-88;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28·29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214쪽;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667쪽.

25) 『사료집』 73, 191쪽.

26)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668~671쪽.

〈표 2〉 농업협동화의 추이, 1953년 8월~1955년 4월\*

| 조사 시점         | 조합 수   | 조합에 속한 농가 수 | 전체 농가에 대한 비율(%) | 조합에 속한 토지 면적 (천 정보) | 전체 토지 면적에 대한 비율(%) |
|---------------|--------|-------------|-----------------|---------------------|--------------------|
| 1953. 8. 31.  | 102    | 1,288       | -               | 4.5                 | -                  |
| 1953. 10. 30. | 217    | 2,911       | -               | 10.1                | -                  |
| 1954. 1. 31.  | 436    | 7,009       | -               | -                   | -                  |
| 1954. 3. 31.  | 736    | 12,929      | -               | 21.0                | -                  |
| 1954. 5. 31.  | 991    | 18,729      | -               | 31.7                | -                  |
| 1954. 11. 1.  | 4,521  | 135,232     | 13.4            | 220.8               | 12.7               |
| 1955. 1. 1.   | 10,098 | 332,662     | 32.8            | 559.6               | 29.0               |
| 1955. 3. 1.   | 11,006 | 395,429     | 38.6            | 713.9               | 38.7               |
| 1955. 4. 1.** | 11,406 | 430,719     | 42.5            | 791.9               | 43.5               |

자료: АВПРФ, ф. 0102, Итоги кооперирования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в КНДР(Справка, май 1955 год), л. 165.

\* 이 통계는 농업협동조합 제2형태와 제3형태만 포함한 것이다.

\*\* 1955년 4월 1일 전체 조합 중 9,844개(86.6%)가 제3형태에 속한다.

하지만 농업협동화운동이 대중적 단계로 접어든 이후에도 ‘자원성의 원칙’이 준수되고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12월에 작성된 소련 대사관 보고서에는 농업협동화운동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사실, 시험적으로 농업협동조합을 2~3개 설립한다는 로동당 중앙위원회의 방침은 유지되지 않았다. 협동조합의 조직화는 너무 급격하였다. 생산협동조합은 각지에 설립되었지만, 인원과 농민을 통합하기 위한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았다. (...)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협동조합화의 수행에 있어서 자유의지와 행정지도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지적되었다.<sup>27)</sup>

<sup>27)</sup> АВПРФ, ф. 0102, оп. 10, п. 58, д. 50, Справка о положении в КНДР(1954. 12.

이미 1954년 여름부터 사실상 협동화는 대중적 단계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1월 당 중앙위원회 지시에서 시작된 ‘경험적 단계’에서의 ‘자원성의 원칙’은 봄까지만 지켜졌다고 할 수 있다. 위 소련 대사관 보고서의 언급은 이후 협동화 과정에서 강제적 수단이 동원되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표 2>를 보면, 협동화 과정이 빈농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는 기존 연구의 견해는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sup>28)</sup> <표 2>에 나타난 협동조합에 속한 농가 수와 토지 면적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55년 1월까지 농가 수의 비중이 약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3월부터 양자가 역전된 상태로 증가한다. 만약 빈농을 중심으로 협동화가 전개되었다면 협동조합에 속한 농가 비율이 토지 면적 비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야 한다.

북한 당국은 토지 소유 규모에 따라 농가를 5개 그룹으로 구분하였는데, 1953년 12월 현재 각 그룹의 비율은 <표 3>과 같다. 북한 당국이 ‘빈농’으로 분류한 것은 1그룹으로, 0.5정보 미만의 토지를 보유한 농가가 여기에 해당되었다. 1정보 미만의 토지를 보유한 1그룹과 2그룹의 비율을 합치면 72.9%로, 전체 농가의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런데 빈농의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고 생각되는 <표 2>의 1954년 11월 통계에서 농가당 평균 토지 면적은 약 1.63정보로 계산된다. 협동조합 제3형태의 비율이 86.6%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게 되는 1955년 4월의 농가당 평균 토지 면적은 약 1.84정보이다. 1953년 기준 북한 전체 농가당 평균 토지 면적은 약 1.80정보였다.<sup>29)</sup> 요컨대 북한의 농업협동화는 초기에 빈농의 비

18), p. 299.

28) 김성보는 북한의 협동화 과정이 초기부터 제3형태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었다는 것을 근거로 토지와 생산수단을 적게 소유한 빈농을 중심으로 운동이 전개되었다고 보았다. 서동만 또한 협동화운동이 노동력과 축력의 부족에 시달리던 빈농, 전재민, 전쟁유가족, 군인가족 등의 호응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김성보, 『남북한 경제구조의 기원과 전개』, 307~313쪽;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666~667·689~690쪽.

율이 비교적 높은 경향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빈농과 중농, 부농이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며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경험적 단계’에서는 ‘모범농민’들의 가입에 의해 농가당 토지면적 비율이 유지될 수 있었다. 하지만 ‘대중적 단계’에서도 이를 유지하려면 일반 중농-부농 또한 일정 비율로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표 3〉 토지 소유 규모에 따른 농가 구분 및 분포, 1953년 12월

| 구분  | 토지 보유 면적 기준(정보) | 전체 농가에 대한 비율(%) |
|-----|-----------------|-----------------|
| 1그룹 | 0.5 미만          | 33.2            |
| 2그룹 | 0.5~0.99        | 39.7            |
| 3그룹 | 1~1.49          | 19.7            |
| 4그룹 | 1.5~1.99        | 5.6             |
| 5그룹 | 2 이상            | 1.8             |

자료: AVΠPΦ, φ. 0102, οπ. 9, π. 49, δ. 57, Προδοβoλbσtβeνнoе пoлoжeннe e KHDР(Спpавкa, дeкaбpь 1953 г.), л. 141.

그렇다면 이들 중농과 부농이 협동조합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자원성의 원칙’은 지켜졌을까? 당시 농민들이 협동조합에 자발적으로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개인의 의사를 계량화하기도 어렵거니와, 그것을 조사자에게 쉽게 밝힐 리도 없을뿐더러, 그와 같은 조

29) 전체 농가당 평균 토지 면적은 1953년 12월 현재 총경지면적(약 194.5만 ha)에서 국영농장의 경지면적(5.7 ha)을 차감한 수치를, 총농가 수(약 105만 호)로 나누었다. 1 정보는 0.99 ha이다. AVΠPΦ, φ. 0102,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Совета Министров СССР по внешним-экономическим связям Отдел по экономике стран Востока, Развитие экономики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борник(1957), лл. 54-61; AVΠPΦ, φ. 0102, οπ. 9, π. 49, δ. 57, Προδοβoλbσtβeνнoе пoлoжeннe KHDР(Спpавкa, дeкaбpь 1953 г.), л. 141.

사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협동화를 경험한 사람의 수거나 증언도 활용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단편적 측면을 보여줄 뿐 일반적 경향을 추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당시 농민, 특히 토지와 생산수단을 보유한 중농부농의 협동조합 가입이 자발적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역축(役畜)<sup>30)</sup> 통계라는 간접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당시 협동화 대상에 포함된 중농과 부농이 역축을 도살하거나 매각하는 방법으로 저항한 사례는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sup>31)</sup> 그럼에도 연구에서 언급한 단편적·지역적 사례만으로는 이들이 어느 정도로 농업협동화에 비협조적이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만약 협동조합에 속한 역축의 농가당 두수가 전체 농가당 두수보다 유의미하게 적다면, 협동조합에 속하게 된 농민이 역축을 매각하거나 도살하였다고 추론할 수 있다. 농민이 협동조합에 포함되면서 역축을 매각도살하는 행위는 그가 협동화에 협조적이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응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여기에는 협동조합에 가입한 빈농·중농·부농의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었다는 전제가 따라야 하고, 이는 앞에서 확인하였다.

30) 북한에서는 소와 말이 역축에 해당한다.

31) 김성보, 『남북한 경제구조의 기원과 전개』, 314~316·329~331쪽. 중국에서도 농업집단화 과정에서 많은 가축이 도살되었다. 한 계량적 연구에 따르면 1955~57년 간 중국에서는 12~15%에 달하는 가축이 도살되었다. 그 결과 농업집단화 후 곡물총생산은 약 7% 감소하였고, 이는 1958년부터 시작된 대기근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 Shuo Chen and Xiaohuan Lan, "There Will Be Killing: Collectivization and Death of Draft Animals," *American Economic Journal: Applied Economics*, 9(4) (2017).

〈표 4〉 전체 농가 및 협동조합 소유 역축의 비교

단위: 천 호, 천 두

| 연월       | 전체 농가* | 전체 농가 역축** | 전체 농가 호당 역축 | 협동조합 농가 | 협동조합 소유 역축 | 협동조합 호당 역축 |
|----------|--------|------------|-------------|---------|------------|------------|
| 1953. 12 | 1079.7 | 501.0      | 0.46        | -       | -          | -          |
| 1954. 12 | 1046.1 | 456.1      | 0.44        | 332.7   | 62.5       | 0.19       |
| 1955. 12 | 1043.5 | 448.3      | 0.43        | 511.3   | 152.2      | 0.30       |
| 1956. 12 | 1069.0 | 457.6      | 0.43        | 864.8   | 273.6      | 0.32       |

자료: AVIPPO, ф. 0102, Развитие экономики Кореиче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борник(1957), лл. 59-61.

\* 1954~56년 통계는 협동조합 농가 호수와 그것이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에서 역산하였다.

\*\* 역축 총 두수에서 국영농장 소유 두수를 제외한 숫자이다.

〈표 4〉의 통계를 보면 1954년부터 1956년까지 농업협동조합의 호당 역축 수는 추세적으로 증가하지만, 전체 농가의 그것에 비해서는 크게 적었음을 알 수 있다. 농호수 비율로 80% 이상이 협동조합에 가입한 1956년 12월에도 협동조합의 호당 역축 수는 전체 평균에 비해 크게 적었다. 이는 협동조합에 속하게 된 중농과 부농의 상당수가 자신의 역축을 도살 또는 매각하였음을 의미한다. 특히 1953년 12월 50만 두가 넘던 역축 두수는 1954년 12월 약 45만 6천 두로 한 해 동안 4만 5천 두 가량 감소하였다. 자연 증가를 고려하면 더 많은 수의 역축이 도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1953년 11월에 채택된 가축 도살 제한 폐지에 관한 내각 결정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sup>32)</sup> 그리고 1954년 12월 현재 전체 농가와 협동조합의 호당 역축 두수 차이는 0.25이다. 이를 총 두수로 환

산[ $0.25 \times 3,327,000$ (협동조합 농호수)]하면 약 8만 3천여 두가 된다.<sup>33)</sup> 즉 협동화 개시 시점으로부터 1954년 12월까지 협동조합 가입 과정에서의 역축 두수 감소량은 최대 약 8만 3천두로 추정된다. 결국 1954년 한 해 동안 4만 5천~8만 3천 두(8~17%) 가량의 역축이 도살 또는 매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1955년과 1956년에 협동조합의 호당 역축 두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은 1954년에 비해 협동조합에 역축을 출자하는 경우가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협동화에 포함된 농민들이 역축을 도살하거나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그 수가 감소하였다는 농업상 김일의 1955년 4월 언급 또한 이와 같은 가정을 뒷받침한다.<sup>34)</sup> 1955년 초부터 농업협동화의 속도가 완만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저항도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을 것이다. 다만 1955년 말과 1956년 말의 호당 역축 통계도 협동조합이 전체 농가보다 적은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에 포함된 역축의 도살이나 매각이 근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사실을 근거로 농업협동화운동이 ‘대중적 단계’로 접어들기 시작한 1954년 후반기, ‘자원성의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적어도 중농과 부농에게 이 시기 농업협동화운동이 강압적·강제적이었던 것은 확실하다. 어떻게 보면 ‘자원성의 원칙’을 내세워 빈농 중심으로 협동화를 추진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인지도 모른다. 토지와 생산수단을 소유한 중농과 부농을 참여시키지 않는 빈농끼리의 협동화는 사실상 품앗이나 노력협조반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중농과 부농의 참여 없는 협동화는 실패가 자명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입

32) 『조선중앙연감』 1954~1955년판, 62쪽.

33) 기존에 협동조합이 보유한 역축 두수를 고려할 수 있지만, 협동화는 1954년 여름부터 대중적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유의미한 숫자는 아니라고 본다.

34) АВПРФ, ф. 0102, оп. 11, п. 60, л. 7, л. 27.

장에서는 강제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들을 협동조합에 포함시키려고 하였을 것이다. 중농과 부농의 참여 없이도 협동화가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에 대한 대규모의 국가적 투자(농기계, 역축, 비료 등)가 필수적이었지만, 당시 북한 당국은 농업에 대한 투자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렇다면 북한 지도부가 강제적 수단을 동원해가면서까지 농업협동화의 속도를 높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현물세 징수와 양곡 수매에서 발생하는 협상가격차를 이용한 농업에서 공업으로의 가치 이전,<sup>35)</sup> 농업 노동력의 절약과 이에 의한 농촌 잉여 노동력의 공업 이전<sup>36)</sup> 등의 설명이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해석은 산업화를 위한 농업 수탈, 즉 ‘사회주의 원시축적’이라는 원론적 전제를 공유하고 있다.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 농업집단화는 ‘사회주의 원시축적’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sup>37)</sup> 북한에서도 현물세와 곡물 수매를 통한 ‘사회주의 원시축적’ 메커니즘의 존재가 확인된 바 있지만,<sup>38)</sup> 여기에 농업협동화가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원론적인 가설만으로는 북한 당국이 소농 경영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기존의 전망을 폐기하고, ‘경험적 단계’를 단축하면서까지 급속한 농업협동화를 강행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농업협동화운동이 급진화된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같은 시기 3개

35)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92~95쪽.

36) 이영훈, 『북한의 경제성장 및 축적체제에 관한 연구(1956~64년): Kaleckian CGE 모델 분석』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2000), 55쪽.

37) 스탈린 시기 소련에서 ‘사회주의 원시축적’으로서의 농업집단화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Paul R. Gregory, *The Political Economy of Stalinism: Evidence from the Soviet Secret Archiv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pp. 40-44.

38)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742~745쪽.

년계획 조기달성으로의 목표 수정과 1955년 계획의 확대에서 보인 북한 지도부의 산업화에 대한 의욕 및 낙관적 분위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54년 말 북한 지도부는 자금·자재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3개년계획의 조기 달성을 포함한 1955년의 비현실적인 성장 목표를 세웠다. 정전 직후 김일성이 제시한 급진적 산업화 노선은 원조협상 과정에서 소련에 의해 제동이 걸렸으나, 1954년 초 복구사업이 일정한 성과를 보이자 그는 국가계획위원장을 박창옥으로 교체하며 급진적 노선으로의 복귀를 시도하였다.<sup>39)</sup> 이는 농업 희생에 기반한 산업화 노선이 농공 균형발전 노선에 우위를 점한 것이며, 후자의 입장에 선 연안계의 위축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1954년 초부터는 식량 부족 현상이 감지되고 있었다. 4월부터 함경남북도에는 식량 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정부에서 식량 4,500톤을 긴급 지원하였다. 함경남북도 뿐만 아니라 평양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도 식량 가격이 오르고 있었다.<sup>40)</sup> 그러나 당 지도부는 그 해 곡물 수확이 300만 톤을 달성할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전망에 기초하여 공업생산 목표를 확대하였다.<sup>41)</sup> 확대된 공업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업협동화는 두 가지 중요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었다. 바로 노동력과 배급 식량이었다.

북한 정부는 1955년에 노동자·사무원 수를 약 23만여 명 증가시키려고 계획하였다. 이 정도 규모의 노동력을 추출할 수 있는 곳은 농촌 밖에 없었다. 1954년 11월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농업협동화를 통해 노동력을 20~30% 가량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농업협동화를 통해 빈농의 토지와 노동력을 통합하고, 이렇게 절약된 노동력을 공업에 투입할

39) 조수룡, 「북한의 전후 복구 3개년계획(1954-56) 수정과 1955년 봄 식량 위기」, 249~253쪽.

40) АВПРФ, ф. 0102, оп. 10, п. 52, д. 8, лл. 71-72.

41) АВПРФ, ф. 0102, оп. 10, п. 52, д. 8, лл. 140-142.

수 있다는 것이었다. 박창옥 또한 농촌 주민을 노동자로 투입함으로써 노동자 수를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sup>42)</sup>

이 시기 농업협동화가 급진화된 또 하나의 이유로 식량수급 문제를 들 수 있다. 도시 노동력을 증가시키려면 이에 비례하여 배급식량 또한 증가시켜야 한다. 이 때 북한 정부는 23만 명의 노동자 수 증가를 계획하였지만, 배급 대상 인원은 약 84만 명이 증가하였다. 부양가족 또한 배급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연간 약 13만 6천 톤의 곡물을 추가로 확보해야만 하였다. 이를 위해 처음으로 양곡에 대한 국가 수매가 단행되었다.<sup>43)</sup>

아울러 자원적 원칙에 따라 수행하도록 한 양곡수매 사업은 농민이 수매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었다. 실제로 1954년 하반기에 농민의 수매 기피 또는 거부가 광범위하고도 격렬하게 발생하였다. 그러나 농업협동조합에서는 그와 같은 저항이 거의 불가능했다. 총수입에서 현물세와 수매 할당량, 사회적 기금(폰드) 등을 원천 공제하고 남는 순수입을 분배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업협동화는 국가가 양곡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농민과의 마찰을 회피하는 수단이기도 하였다.<sup>44)</sup>

요컨대 1954년 하반기부터 농업협동화의 속도가 갑자기 빨라진 것은 1955년도 공업생산 계획의 급격한 확대와 관련이 있었다. 확대된 목표의 달성을 위한 대규모 추가 노동력과 배급 식량의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농업협동화는 그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다만 북한 당국의 방침과 달리 농업협동화

42) 조수룡, 「북한의 전후 복구 3개년계획(1954-56) 수정과 1955년 봄 식량 위기」, 257~258쪽.

43) АВПРФ, ф. 0102,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е положение КНДР(Справка, декабрь 1954 г.), л. 17; 조수룡, 위의 논문, 257쪽.

44) 박훈일, 「농업 협동 조합 규약은 조합 생활의 기본이다」, 『인민』 1954년 10호, 102쪽; 조수룡, 위의 논문, 258쪽.

과정에서 ‘자원적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적어도 농민의 다수를 차지한 중농과 부농은 농업협동조합에 비자발적으로 가입하였다. 조합에 출자를 회피한 이들의 도살로 인해 역축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1954년 내내 벌어진 이 사태는 식량위기를 비롯하여 향후 몇 년간 농업생산이 침체되는 원인 중 하나를 제공하였다.

#### IV. 조정기와 양적 성장의 재개, 협동화의 완성

1954년 말부터 1955년 초 사이에 급격히 증가한 농업협동조합이 봉착한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조직적 부실이었다. 이 문제는 1955년 4월 김일성의 모스크바 방문 시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졌다. 소련공산당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의 양적 성장을 억제하고 조직·경제적 강화 사업에 주력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1955년 6월 15~20일 열린 당 확대상무위원회에서는 협동조합의 양적 성장을 제한하고, 이들의 조직적·경제적 강화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 결정되었다. 협동조합의 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약 1,500명의 인력이 군 단위로 파견되었고, 간부를 양성하기 위한 3,000명 규모의 교육과정이 개설되었다. 또한 조합 운영을 합리화하고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협동조합 규약 초안과 「협동조합 관리성원과 작업반장의 보수에 대한 규정」이 작성되었다.<sup>45)</sup>

이 결정에 따라 대규모 중앙당 집중지도사업이 전국적으로 벌어졌다.

<sup>45)</sup> АВПРФ, ф. 0102, Мероприят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НДР по исправлению положения, сложившегося в результате ошибок в области экономики(сентябрь 1955 год), л. 226.

6월 23일부터 각 군 단위로 3~4개의 지도그룹이 조직, 파견되면서 전국에 약 7백여 개의 그룹이 농촌 지역에 파견되었다. 연인원 4,000명에 달한 지도그룹은 약 3개월간에 걸친 기간 동안 전체의 38%에 해당하는 4,387개 농업협동조합을 직접 지도하였다. 집중지도사업이 가장 주력한 것은 농업협동조합 관리 간부의 선발·배치와 조합 내부 노동규율의 확립이었다. 이를 통해 이른바 ‘제대군인’, ‘인민군후방가족’, ‘혁명투쟁경력자’, ‘열성농민’ 등이 새로운 지도간부로 발탁되었다. 또한 집중지도를 통해 조합의 운영이나 기구 등이 표준화되었다.<sup>46)</sup>

중앙당 집중지도사업을 통해 기존 농업협동조합의 운영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구체적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1955년 11월 8일 당 중앙위원회 지시 「농업협동조합들의 새로운 발전과 강화를 위한 제 대책에 관하여」에 의해 협동조합의 양적 확대가 다시 추진되었다.<sup>47)</sup> 그런데 서동만이 지적한 것처럼 이 지시가 구체적으로 어디서 결정된 것인지는 모호하다. 당 중앙위원회 지시라고는 하지만 정치위원회나 상무위원회에서 결정된 흔적은 남아있지 않다. 중앙위원회 차원에서는 12월 2~3일 진행된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것이 처음이다.<sup>48)</sup> 11월 8일의 지시가 당 의결기구의 승인을 얻은 것인지도 확실치 않다.

러시아연방대외정책문서보관소(АВІРРФ) 소장 자료 중에서 이에 대한 의문을 풀어줄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당 중앙위원회 농업부에서 작성

4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경제법학연구소, 『해방후 우리 나라의 인민경제 발전(8-15 해방 15주년 기념)』(평양: 과학원출판사, 1960), 138쪽; 김석현, 「농업협동조합관리일꾼의 질적 구성을 개선하고 그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협동화운동의 승리』 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8), 325-326·333-334쪽; 피창린, 「전후 당의 농업정책 관철을 위한 평안남도당단체의 투쟁」, 같은 책, 26쪽;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687~688쪽.

47) 현무광, 「농업 협동화 운동에서 당 정책 관철을 위하여」, 『농업협동화운동의 승리』 6, 151쪽.

48) 『사료집』 30, 658쪽;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690쪽.

한 「농업협동조합의 향후 발전과 강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이라는 보고서는 1955년 농업협동조합의 실태와 그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작성자는 당 중앙위원회 농업부로 확인되지만 작성 일자에는 기재되어있지 않다.<sup>49)</sup> 그런데 11월 30일 이바노프가 이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언급하자, 이에 대해 김일성은 협동조합에 파견되었던 당 지도그룹의 사업을 종합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sup>50)</sup> 이로 미루어 볼 때 이 보고서는 11월 8일의 지시문과 12월 전원회의 결정을 위해 작성된 것이다. 보고서의 원문은 소련대사관에 의해 러시아어로 번역되었고, 이바노프와 김일성의 대화에서 거론되었다.

보고서에서 다룬 농업협동조합의 실태는 강행적 협동화의 부작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보고서는 1955년 8월 현재 11,543개 농업협동조합 중 54.3%에 해당하는 6,268개 조합에 대한 검열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34%의 농업협동조합이 협동화 전보다 낮은 수확을 달성한 취약조합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속한 조합원들의 수입은 협동화 이전에 비해 적었으며, 이들은 식량을 보장받지 못하였다. 나머지 66%의 협동조합은 현물세를 납부하고 자가 소비를 보장할 수 있는 정도의 수확을 올렸다. 하지만 시장과 소비조합에 판매할 잉여 양곡을 보유한 협동조합은 전체의 27%에 불과하였다. 특히 식량난이 가장 심각했던 함경북도의 경우, 취약한 협동조합의 비율은 58%에 달했다.<sup>51)</sup>

보고서에 따르면 협동화는 생산성 향상이나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성

49) АВПРФ, ф. 0102, Отдел с/х ЦК ТПК, Некоторые предложения по дальнейшему развитию и укреплению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кооперативов.

50) АВПРФ, ф. 0102, оп. 11, п. 60, д. 7, лл. 165-171.

51) 위의 자료; АВПРФ, ф. 0102, Итоги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го года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е положение КНДР(справка, декабря 1955г.), л. 266; АВПРФ, ф. 0102, Отдел с/х ЦК ТПК, Некоторые предложения по дальнейшему развитию и укреплению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кооперативов, л. 295.

공을 거두고 있지 못했다. 1955년 상반기 조합원의 출근율은 46%에 불과하였고, 37%가 규정된 연간 200일의 노동일 중 55일 이하로 일하였다. 많은 협동조합에서는 적절한 노동조직과 생산기준이 없고, 노동일 또한 정확하게 계산되지 않았다. 협동조합 관리위원장의 30%, 부기원의 31%, 부위원장의 27%, 감사위원장의 35%가 정치적 문제가 있거나 조합원의 신임을 잃은 부적격자로 나타났다. 또한 협동조합 지도간부의 반수 이상이 직책에 맞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협동조합 재산을 탕진하거나 횡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였고, 조합은 조합원의 신뢰를 잃고 있었다. 협동조합 탈퇴 의사를 표시하는 조합원의 수가 38%에 달했다.<sup>52)</sup>

이와 같은 협동조합의 부실은 불과 수 개월간의 집중지도에 의해서 개선되기 어려워 보였다. 특히 새로운 간부를 양성하는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는 현재 협동조합에 “일부 결점과 부정적 측면이 있지만, 기초가 세워졌다”면서, 협동조합의 양적 확대가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보고서가 근거로 든 것은 남아 있는 개인농이 협동조합 가입 또는 새로운 협동조합의 조직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농업성의 조사에 따르면 8월 현재 남아 있는 개인농 약 53만 명의 협동조합 가입 의사는 <표 5>와 같다.

52) АВПРФ, ф. 0102, оп. 11, п. 60, д. 7, лл. 165-171; АВПРФ, ф. 0102, Отдел с/х ЦК ТПК, Некоторые предложения по дальнейшему развитию и укреплению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кооперативов, лл. 310-337.

〈표 5〉 개인농의 협동조합 가입 의사, 1955년 8월

| 가입을 원함  |    | 가입에 중립적 |      | 가입을 원치 않음 |      | 계       |
|---------|----|---------|------|-----------|------|---------|
| 명       | %  | 명       | %    | 명         | %    |         |
| 189,329 | 35 | 245,336 | 45.6 | 102,418   | 19.4 | 537,083 |

자료: АВПРФ, ф. 0102, Отдел с/х ЦК ТПК, Некоторые предложения по дальнейшему развитию и укреплению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кооперативов, л. 295.

조사에 따르면 전체 개인농 중 약 35%가 협동조합 가입을 원하고 있었다. 가입을 원하지 않는 개인농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물론 조사 결과가 개인농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조사 방법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정부기관의 조사에 농민들이 솔직하게 답변할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이 조사 결과가 농업협동조합의 양적 확대 재개 방침의 근거로 활용되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개인농의 3분의 1이 기존 협동조합 가입 또는 새로운 협동조합의 조직을 요구하기 때문에” 협동조합 양적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러한 대중의 요구가 무시되고 억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였다.<sup>53)</sup>

다만 보고서는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며 협동조합 조직 시 다음 원칙이 준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① 농민의 사상교양에 기초한 계획에 따라 엄격히 협동조합을 조직하고, 자원성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할 것. 사군 당위원회는 이를 직접 책임져야 함.
- ② 협동조합의 비율이 높지만, 조직적·경제적 결함을 가진 지역에서는 협동조합의 양적 발전을 계속 제한할 필요가 있음.

<sup>53)</sup> Там же, л. 338.

- ③ 한 리에 여러 협동조합이 조직된 곳에서 농민들이 협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새로운 협동조합을 만들지 말 것. 이 농민들은 기존 협동조합에 가입하도록 권장할 것. 협동조합이 없는 리와 마을에서만 농민들의 요청에 따라 새로운 협동조합을 창설할 것.
- ④ 협동조합의 새로운 확대와 관련하여 지도 간부 보유 여부 및 협동화의 발전 전망을 고려하여 기존 협동조합의 일부 개편이 필요하다. 대규모 협동조합은 그에 따라 분할되고 재조직되어야 하며, 한 리에 존재하는 소규모 협동조합은 강화되어야 한다.<sup>54)</sup>

보고서에서 농업협동조합의 신규 조직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 것은 1954년 말에 추진한 급격한 협동화의 부작용과 함께, 양적 확대의 자제를 권고한 소련 측을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우려대로,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한 이바노프는 현재 북한 농업협동화의 중요한 과제는 협동조합을 조직·경제적으로 강화하는 것이지, 양적 확대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김일성은 아직도 취약한 협동조합이 많고 준비된 간부가 부족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협동조합의 양적 확대를 승인하였다고 언급하였다.

- ① 전쟁 시기 농촌 노동력이 감소했기 때문에 협동화 속도가 빠른 것은 당연하다. 개인경리에서는 노인과 여성이 작업을 모두 감당할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노동을 경감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찾고 있다.
- ② 인민민주주의국가들에서는 농민들이 넓은 토지와 많은 농기구, 역축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농가당 0.7정보의 토지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경지를 복구해야 하는 데 개인 경리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 우리의 조건에서 협동화의 기본은 토지를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통합하는 것이다.
- ③ 우리는 협동조합 가입이나 새로운 협동조합의 조직을 계속 승인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많은 농민들이 그것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sup>55)</sup>

<sup>54)</sup> Там же, л. 339.

김일성이 언급한 협동화 재개의 이유는 크게 노동력의 통합과 개인농의 요구로 요약할 수 있다. 이들 이유는 1954년 하반기 대중적 단계의 협동화를 시작하던 시기에 이미 제기한 것이었다. 특히 노동력 통합이라는 이유는 기존 농업협동조합의 부실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협동화를 재개해야 할 명분으로는 부족하였다. 다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노동력 통합이 농촌의 잉여노동력을 도시에 공급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이라면, 5개년계획의 수립을 앞둔 시점에서 납득할 만한 이유가 될 것이다.

예전과 달리 김일성이 협동화에 대한 소련 측의 우려에 대해 표면적인 동의조차 표하지 않은 것도 주목할 만하다. 그는 협동화의 재개가 시기상조라는 이바노프의 지적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자신들은 나라의 현 상황을 고려하면서 소련 측의 의견을 참작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8월 파북 고려인에 대한 국적 전환을 요청하고 12월 전원회의에서 반소련계운동의 개시를 앞둔 상황에서, 김일성에게는 소련 측의 견해에 일단 동의하는 걸치레도 불필요했다.

김일성은 협동조합의 양적 확대를 재개하라는 지시문을 각 지방에 내려 보냈다고 언급하면서, 지시문에서 언급한 구체적인 방침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지시문에서는 농민의 기존 협동조합 가입과 새로운 협동조합의 조직 사업을 1월 말까지만 진행할 수 있으며, 봄 파종기의 시작과 함께 중단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시문에서는 협동화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과제를 부여하지 않았다. 보고서의 제안과 마찬가지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었다. 반면 이바노프는 북한 지도부가 소련 측과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특수한 상황을 핑계로 대면서 협동조합을 확대하려고 있다고 기록하였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소련 측의 입장을 가능한 시기에 다시 한 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sup>56)</sup>

<sup>56)</sup> АВПРФ, ф. 0102, оп. 11, п. 60, д. 7, лл. 165-171.

이렇듯 소련 측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었지만 양적 확대는 이미 재개되고 있었다. 당 중앙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1955년 11월부터 중앙과 지방으로부터 8,000여 명의 간부를 동원한 집중지도사업이 전개되었다.<sup>57)</sup> 6~9월에 진행된 농업협동조합의 조직·경제적 강화를 위한 집중지도사업에 비해 두 배의 인원을 동원한 것이다.

12월 2~3일에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농업협동화의 재개 문제는 다시금 논란이 되었다. 예기치 않은 김일성의 소련계 비판에 가려 연구자의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애초 이 회의의 의제는 1954년 11월 전원회의 결정 총화, 즉 농촌 경제의 복구 발전 사업을 결산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었다. 자연스럽게 국가계획위원장 박창옥과 농업상 김일이 주도한 농업정책의 실패가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 회의 결정서는 국가계획위원회와 농업성을 명시적으로 거론하며 “과장된 통계 보고들과 단순한 주관적 욕망에 근거하여 현실과 유리된 높은 계획들을 작성하여 하부에 내려댐”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당 정치위원회에서의 비판에 의해 계획을 수정한 후에도 여전히 관료주의적 사업 태도가 계속됨으로써 변경된 계획도 농촌 실정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sup>58)</sup>

회의에서는 농업협동화의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일부 조합에서 민주주의적 관리원칙이 준수되지 않고 노력조직 및 경영관리가 부실하며, 조합원들의 낮은 사상의식 수준으로 인해 생산이 낙후한 수준에 있다고 비판하였다.<sup>59)</sup> 11월 전원회의 이후 농업정책이 전반적으로 비판적 평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서동만이 지적한 것처럼 실패의 책임은 국가계획

56) Там же, 165-171.

5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경제법학연구소, 『해방후 우리 나라의 인민 경제 발전(8·15 해방 15주년 기념)』, 139쪽.

58) 『사료집』 30, 639~640쪽.

59) 위의 책, 643쪽.

위원회와 농업성 공동의 책임으로 돌려지고 있었다.<sup>60)</sup>

그러나 회의 결론에서 김일성이 갑작스럽게 제기한 문학예술 분야 사업에서의 소련계 비판이 상황을 반전시켰다. 농업 문제와 함께 박일우와 김열에 대한 비판 및 처벌이 회의의 원래 의제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의 결론에서 김일성의 비판은 대부분 소련계를 향했다. 그는 와병으로 궤석한 박영빈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맞추며, 박창옥기석복정률 등을 함께 공격하였다.<sup>61)</sup> 당내 주류의 농업정책에 시종 비판적이었고, 소련계와도 갈등하고 있던 연안계가 여기에 가세함으로써 당내 역학 구도는 소련계가 고립되는 모양새로 급격히 전환되었다. 결과적으로 김일은 농업정책 실패의 책임론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고 비판은 박창옥에게 집중되었다.

12월 전원회의에서의 소련계 비판은 당내 주류가 제3차 당대회와 5개년계획의 수립에 앞서, 소련의 영향력 차단과 당내 세력 재편을 염두에 두고 준비한 것이었다. 농업정책 또한 제1차 5개년계획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농업협동화의 재개와 소련계 비판이 같은 시기에 벌어진 것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 소련의 압력에 의해 채택되었고, 당내에서도 연안계의 지지를 받고 있던 농업협동조합의 양적 성장 억제 정책을 무산시키기 위해서는 희생양이 필요하였다. 국가계획위원장으로 정책 실패의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평소 권위주의적 행동으로 소련계 내에서도 호의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던 박창옥이 제물로 선택되었다.

당내 주류가 소련계를 희생시키기 위해 연안계와 일시적 제휴를 추구한 이상, 정책 측면에서의 일정한 양보도 필요하였다. 12월 전원회의에

60)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691-692쪽.

61) 조수룡, 「전후 북한에서의 소련계 숙청과 국적 문제(1954~1958)」, 『동북아역사논총』 56 (2017), 264쪽.

서 농업협동조합의 양적 확대 방침은 유지되었지만, 그 방법은 11월 8일 지시에서보다 더욱 신중한 형태로 표현되었다. 회의 결론에서 김일성은 농업협동조합을 조직·경제적으로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발언하였다. 여기에 조합을 확대하는 사업을 결합하여 진행할 것을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는 농민들이 자원하여 농업협동조합에 들려고 하는 것을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농민들이 자원적으로 농업협동조합에 들 것을 요구할 때는 그들을 적극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농민들이 농업협동조합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그들을 강제적 방법으로 협동조합에 끌어들이어서는 안 됩니다.<sup>62)</sup>

회의 결정서 또한 농업협동조합의 경제적 여건 제고, 간부의 양성, 생산조직의 합리화, 조합원에 대한 의식 교양 등의 사업에 중점을 두었다. 농업협동조합의 양적 확대에 대해서는 “자원성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심중히 조직 진행”해야 한다면서 조합에 가입하려는 빈농의 요구를 거부하지 말되, 협동조합의 조직은 반드시 핵심이 형성된 조건 하에서만 추진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앞으로 상당한 기간 개인농 경리가 존속되리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개인농에 대한 지도 및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협동화운동이 대중적 단계로 접어든 이후 사실상 무시된 노력협조반, 즉 농업협동조합의 제1형태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다시금 강조되었다. 결정서는 노력협조반이 “농업협동화의 초보적 형태로서 농민들에게 일정한 단련과 교양을 줌으로써” 협동경리의 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지역에 따라서는 이를 광

62) 김일성, 「농촌경리의 급속한 발전을 위한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55년 12월 2~3일」, 『김일성 전집』 18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7), 367쪽.

범히 조직하여 협동조합 발전의 기초로 삼을 것을 규정하였다.<sup>63)</sup> 이미 제3형태가 지배적 위치를 확고히 한 당시 상황에서 제1형태에 대한 새삼스러운 강조는 전면적 협동화의 유예와 점진적 속도를 강조한 연안계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표 6〉을 보면 1955년 12월에서 1956년 2월까지 세 달 동안 진행된 협동화는 12월 전원회의 방침과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세 달 동안 조합 수는 2,519개,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조합 소속 농호 수 비율은 16.6% 증가하였다. 협동화가 가장 급격하게 전개되었던 1954년 11~12월 두 달 간 조합 수가 5,577개, 농호 수 비율이 19.4% 증가했던 사실(〈표 2〉 참조)과 비교하면 완만하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양자가 완전히 다른 기초에서 추진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1955~56년간의 협동화 추이가 점진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주목해야 할 사실은 1956년 2월 이후에도 협동조합의 양적 확대가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전원회의 직전 이바노프와의 대화에서 김일성의 언급에 따르면, 11월 8일 지시문에서는 개인농의 협동조합 가입과 신규 조직을 1월 말까지만 진행하도록 규정되었다. 1954~55년에 그랬던 것처럼 농번기의 협동화 강행은 농업생산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연말 결산 분배에서도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12월 전원회의 직후 그는 각 도당위원장의 보고를 기초로 1956년 협동화 비율이 60~65%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sup>64)</sup> 그런데 1956년 말까지로 전망한 수치는 이미 2월에 달성되었다. 1956년 12월 협동화 비율은 목표치를 훨씬 초과하여 농호 수 기준 80.9%, 경지면적 기준 77.9%에 달하였다. 매우 신중하게 협동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은 물론, 농번기에는 추진하지 않

63) 『사료집』 30, 658-661쪽.

64) АВПРФ, ф. 0102, оп. 11, п. 60, д. 7, лл. 165-171; РГАНИ, ф. 5, оп. 28, д. 412, лл. 6-20.

겠다는 방침 또한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표 6〉 농업협동화의 추이, 1955년 봄~1958년 8월

| 시 기       | 조합 수   | 농호 수<br>비율(%) | 경지 면적<br>비율(%) |
|-----------|--------|---------------|----------------|
| 1955년 봄   | 11,535 | 44.7          | 44.9           |
| 1955년 12월 | 12,132 | 49.0          | 48.6           |
| 1956년 2월  | 14,651 | 65.6          | 62.1           |
| 1956년 6월  | 14,777 | 70.5          | 66.4           |
| 1956년 12월 | 15,825 | 80.9          | 77.9           |
| 1957년 3월  | 15,893 | 85.5          | 84.0           |
| 1957년 12월 | 16,032 | 95.6          | 93.7           |
| 1958년 3월  | -      | 98.6          | 99.1           |
| 1958년 8월  | 13,309 | 100           | 100            |

자료: 김한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농업협동화운동의 승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9), 42쪽;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 체제성립사』, 716쪽.

점진적 속도뿐만 아니라 자발적 가입이라는 원칙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황해남도 배천군의 경우, 1956년 말에서 1957년 초 사이에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협동조합에서 탈퇴한 ‘배천바람’으로 잘 알려져 있다.<sup>65)</sup> 이 지역은 이른바 ‘신해방지구’로서 정권에 대한 지지가 취약할 뿐만 아니라 부농과 중농을 중심으로 협동화 정책에 대한 거부감이 팽배한 지역이었다. 이러한 지역적 배경이 집단적 탈퇴운동의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다.<sup>66)</sup> 이 외에도 이러한 집단적 탈퇴운동에는 협동조

65) ‘배천바람’의 내용과 그 여파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700-705쪽.

66) 위의 책; 김성보, 『남북한 경제구조의 기원과 전개』, 332쪽.

합 가입에서 자발적 원칙의 위반이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100% 협동화’라는 구호를 걸고 무리하게 가입을 종용한 결과 1956년 9월에서 10월 사이의 두 달 동안 군내 협동조합 가입 농가 비율이 40%에서 90%로 증가한 것이다.<sup>67)</sup>

이처럼 협동화가 다시 가속화하는 가운데 열린 제3차 당대회에서 김일성은 “제1차 5개년계획 기간에 농촌경리의 전반적 협동화를 완료할 수 있는 전망”이 열렸다고 선언하였다.<sup>68)</sup> 이와 같은 발언은 “앞으로 상당한 기간 개인농 경리가 존속되리라는” 3개년계획과 12월 전원회의의 방침을 뒤집은 것은 물론, ‘전반적 협동화’의 유예를 주장한 비주류의 입장을 무시한 발언이었다. 이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리상조, 김승화 등의 토론 신청은 묵살되었다. 오직 김두봉만이 토론에서 양곡수매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 단계 혁명이 “공화국 북반부 사회주의 ‘기초’(강조는 인용자) 건설”임을 강조하는 등 김일성과의 인식차를 드러내었을 뿐이다.<sup>69)</sup>

제3차 당 대회 소련공산당 대표로 참석한 브레즈네프 또한 김일성과의 회견에서 협동화의 가속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앞 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는 김일성에게 경제정책에 대한 의견을 “요령 있게” 전달하였다고만 기록하였다. 그는 북한으로 출발하기 전 소련공산당 국제부에서 작성한 5개년계획 초안에 대한 권고 사항을 보고받았다. 이 자료는 브레즈네프가 제3차 당대회 사절단 임무를 수행하

67) АВПРФ, ф. 0102, Положение в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кооперативах КНДР/справка/(1957. 10. 16.), лл. 130. ‘배천바람’에 대해서는 북한 측 자료에서도 같은 원인을 지적하고 있다. 『로동신문』 1956. 12. 14.

68)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3차 대회에서의 중앙위원회사업 총결보고」, 『로동신문』 1956. 4. 24;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695쪽에서 재인용.

69) 「조선 로동당 중앙위원회 및 중앙 검사 위원회 사업 총결 보고에 대한 토론 - 김두봉 동지의 토론」, 『로동신문』 1956. 4. 24.

는 과정에서 활용되었다. 이 권고 사항에는 농업협동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첫 5개년 계획에서 농업협동화의 완수에 대한 지시는 시기상조이며 부정확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만들어진 농업생산협동조합의 조직적·경제적 강화에 주의와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사업 조직, 토지의 정확한 이용, 농업기술의 향상을 통해 농업생산협동조합에서 농산물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생산협동조합에 가입한 농민들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이해의 능숙한 조화를 보장하는 것이다.

농민경리의 생산협동은 우선, 협동의 가장 간단한 형태의 형성을 통해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수행할 때에는 협동조합의 자원적 가입 원칙을 엄격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

생산협동조합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농산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농민경리에 관심을 표하고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sup>70)</sup>

권고 사항은 김일성이 제3차 당 대회에서 천명한 5개년계획 기간 내 농업협동화의 완수 방침을 정면으로 비판하였다. 또한 농업협동조합의 조직·경제적 강화, 협동조합의 낮은 형태로부터의 점진적 발전, 개인농경영에 대한 관심 등을 강조하였다. 브레즈네프는 이 내용을 어떤 형태로든 김일성에게 전달하였을 것이다.

김일성은 이와 같은 권고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8월전원회의사건과 9월전원회의에서의 정치적 격변 이후 북한 지도부가 소련 측의 개입 또는 권고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일은 사라졌다. 1957년 5월 박정애

<sup>70)</sup> РГАНИ, ф. 5, оп. 28, д. 412, Рекомендации по проекту директив к составлению пятилетнего плана развития народного хозяйства КНДР на 1957-1961 годы(17.4.1956), л. 181.

는 푸자노프에게 1956년 김일성의 모스크바 방문 당시 포노마료프가 북한의 농업협동화를 비판한 일을 상기시키며, 당시 자신들의 행동이 옳았다고 강변하였다.<sup>71)</sup> 이 대화는 1956~57년 북소 관계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후 농업협동화는 소련공산당이나 당 지도부 내 반대파의 제동 없이 순조롭게 추진되었다. 1957년 9월 20일에는 농업 분야의 인사가 이루어져 농업상 김일이 부수상으로 이동하고, 농업상에는 한전종이 임명되었다. 연안계 박훈일이 숙청된 당 농업부장 자리에는 김일성의 측근 테크노크라트인 현무광이 임명되었다.<sup>72)</sup> 1958년 3월 제1차 당대표자대회에서 당 농업부장은 다시 김만금으로 교체되었다. 농호 수 기준으로 협동화 비율이 80.9%를 기록한 12월에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인민경제 각 분야에서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가 확고한 지배적 및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선언하였다.<sup>73)</sup> 이는 농업협동화운동이 완성 단계로 접어들게 됨을 의미하였다.

1958년 3월 말 현재 전체 농지 면적의 99.1%, 농가의 98.6%가 협동조

71) 『사료집』 74, 75~76쪽.

72)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708쪽; 呂政, 『붉게 물든 대동강』 (서울: 동아일보사, 1991), 83쪽. 서동만은 여정의 회고를 인용하여 현무광이 임명되기 전까지 함남도당위원장 현정민이 당 농업부장의 역할을 겸직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확인되지는 않는다. 한편 구소련 자료에 따르면 9월에 함경남도 당위원장은 현정민에서 현무광으로 교체되었다. 이후 현정민은 요양을 위해 소련으로 갔다고 한다. 그리고 당 농업부장 직은 박훈일이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1957년 10월 전원회의에서 현무광으로 경질되었다. 물론 명목상 직위만 유지할 뿐 실제 직무는 수행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현무광은 함남도당위원장에 부임한 지 한 달 만에 당 농업부장으로 전보되었다는 것인데, 자연스러운 인사로 보이지는 않는다. 여정의 회고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АВПРФ, ф. 0102, оп. 13, п. 72, д. 5, лл. 300-303; АВПРФ, ф. 0102, оп. 17, п. 26, д. 5, лл. 120-122.

73)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에서」, 『로동신문』 1956년 12월 15일.

합에 포함되어, 협동화운동은 사실상 완료되었다. 당 중앙위원회 농업부장 김만금은 외딴 산간 지역의 고령 농민 가구와 전국적으로 200여 가구의 부농이 아직 협동화되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산간 지역 농민을 평야 지대에 이주시키고, 부농에 대해서는 5%의 현물세를 추가로 부과함으로써 협동화를 최종적으로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sup>74)</sup>

9월 26~27일에 열린 당 전원회의에서 농업협동화의 완료를 선언하였지만, 이때까지도 협동화는 100% 완료되지 않았다. 1958년 9월 3일 시점에서 총 농호 기준 98.6%, 농지 면적 기준 99.1%라는 협동화 비율 통계는 그대로였다.<sup>75)</sup> 극소수의 농민이 이 시점까지 개인 경영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은 사회주의 개조 과정에서 물리적 강제까지는 동원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비협조적인 농민과 상공업자에 대해 정치적·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사회주의 개조를 추진하였지만, 물리적 강제 수단까지 동원한 소련이나 중국에 비해 훨씬 순조롭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같은 수단을 사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극히 일부의 개인농과 상공업자를 남겨놓는 것은 자신들이 자발적 원칙에 입각하여 협동화를 추진하였음을 통계적으로 입증하는 효과 또한 노릴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9월 전원회의에서 협동화의 완료를 선언한 것은 협동화 이후 한층 급진화된 전망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9월 전원회의의 주된 의제는 농업의 수리화였다. 회의에서는 농업협동화의 성과에 기초하여 제1차 5개년계획 기간 동안 논·밭을 합해 약 100만 정보의 관개면적 확장을 결정하였다.<sup>76)</sup> 다음 달 열린 상무위원회에서는 농업협동조합의 조직적 강화, 즉 리 단위 통합이 결정되었다.<sup>77)</sup> “천리마를 탄 기세”, “사

74) АВПРФ, ф. 0102, оп. 14, п. 75, д. 8, лл. 167-170.

75) 『로동신문』 1958년 9월 3일, 28일.

76) 『로동신문』 1958년 9월 28일.

회주의 건설에서의 결정적 전진”과 같은 구호와 함께 중국의 대약진 운동, 소련의 공산주의 건설과 관련한 내용이 『로동신문』 등을 통해 활발하게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 V. 맺음말

이 글에서는 북한 농업협동화의 전개 과정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 번째 단계는 이른바 경험적 단계로 정전 전후로부터 1954년 상반기까지 기간이 해당된다. 이 시기 당 중앙위원회는 조직·운영의 기본 원칙과 세 가지 기본 형태를 제시하고, ‘모범농민’과 빈농을 중심으로 각 군마다 2~3개의 농업협동조합을 시범적으로 조직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협동화운동을 전면화한 대중적 단계가 시작되었다. 1954년 11월 전원회의에서 대중적 단계의 개시가 선언되었지만, 실제로는 같은 해 6~7월부터 농업협동조합의 대중적 확대가 시작되었다. 이 단계에서는 빈농 외에도 상당한 수의 중농과 부농이 일정 비율을 유지하며 가입하였지만 ‘자원성의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들은 강압에 의해 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하면서 보유한 역축을 출자하지 않고 도살·매각하곤 하였다.

조선로동당이 이처럼 강제적 수단까지 동원해가면서 농업협동화의 속도를 높인 이유는 당시 산업화 노선의 급진화와 관련이 있다. 전후복구 3개년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소련에 의해 제동이 걸린 급진적 산업화 노선은 1954년 상반기를 지나며 다시 등장하였다. 급격히 상향 조정된

77) АВПРФ, ф. 0102, оп. 14, п. 75, д. 7, лл. 29-68.

1955년 계획과 3개년계획의 조기 달성을 위해 대량의 노동력과 이들에게 공급할 식량 수요가 발생했다. 조선로동당은 농업협동화를 가속화함으로써 농촌 노동력을 도시로 이전시키고, 농업협동조합에서 저항 없이 양곡을 수매하여 배급 식량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은 순조롭지 않았고, 협동화 및 양곡 수매에 대한 저항과 심각한 식량 위기를 초래하였다.

세 번째 단계도 대중적 단계에 포함되지만, 1955년 하반기의 짧은 조정기로부터 시작되었다. 농업협동조합의 부실과 식량 위기에 봉착한 조선로동당은 모스크바의 권고에 따라 1955년 6월 농업협동조합의 양적 성장을 제한하고 내실을 강화하기 위한 중앙당 집중지도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이 조정기는 10월까지만 지속되었고, 11월부터는 협동조합의 양적 확대가 다시 추진되었다. 전면적 협동화는 급진적 산업화를 위한 정책이었는데, 북한 지도부는 모스크바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는 자원성의 원칙과 점진적 속도가 강조되었지만 마찬가지로 지켜지지 않았고, ‘배천바람’과 같은 집단적 탈퇴 운동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제3차 당 대회에서 8·9월 전원회의에 이르는 ‘1956년 위기’를 거치며 김일성과 당내 주류 세력은 내외의 비판적 의견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이후 조선로동당은 자신의 급진적 산업화 노선과 전면적 농업협동화 정책을 불협화음 없이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었다. 1957년 12월 전원회의 이후 농업협동화운동은 완성 단계로 접어들었으며, 이듬해 9월 조선로동당은 그 완료를 선언하였다.

애초 제1차 5개년계획 이후로 전망되었던 농업협동화의 완성은 그보다 훨씬 이른 1958년에 이루어졌다. 농업협동화를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이뤄낸 최초의 인민민주주의 국가라는 북한 측과 일부 연구의 평가와는 달리 그 시행 과정은 순조롭지 않았으며, 김일성과 조선로동당의 의지에

의해 강행적으로 추진되었다. 급진적 정책의 시행을 순탄치 못하게 만든 것은 근본적으로는 정책의 난맥이 만들어낸 경제 위기였지만, 직접적으로는 농민의 저항이라기보다는 소련과 당내 비주류의 견제였다. 1956년 이후의 협동화 과정이 비교적 순조로웠던 것은 그 때문일 것이다. 1950년대가 북한 정치·사회의 역동성이 살아있던 시기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정치 상층부와 사회적 엘리트 집단 내부에 국한되는 이야기일 뿐이며, 1946년부터 10년의 인민민주주의 시기를 거치며 북한의 국가—인민 관계는 비대칭적으로 고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접수: 2021년 10월 31일 / 심사: 2021년 12월 10일 / 게재확정: 2021년 12월 10일

**【참고문헌】**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 30,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8.  
 과학원경제법학연구소 편,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경제건설(론문집)』, 평양: 과학원출판사, 1958.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서울: 역사비평사, 2001.  
 『김일성전집』 16·1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김성보, 『남북한 경제구조의 기원과 전개: 북한 농업체제의 형성을 중심으로』, 서울: 역사비평사, 2000.  
 김한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농업협동화운동의 승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9.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28·29,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61』, 서울: 선인, 2006.  
 呂政, 『불계 물든 대동강』, 서울: 동아일보사, 199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농업협동조합 경험집 편집위원회 편, 『농업협동화운동의 승리』 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경제법학연구소, 『해방후 우리 나라의 인민 경제 발전(8·15 해방 15주년 기념)』, 평양: 과학원출판사, 1960.  
 진승권, 『사회주의, 탈사회주의, 그리고 농업: 동유럽과 아시아에서의 농업의 집단화』,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6.

Gregory, Paul R., *The Political Economy of Stalinism: Evidence from the Soviet Secret Archiv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권태상, 「북한의 농업협동화 시기 국가·마을 관계 연구」, 『통일문제연구』 제29권 2호, 2017, 83~111쪽.  
 김영희, 「중국과 북한의 농업집단화에 대한 비교 고찰」, 『한중인문학연구』 35호, 2012, 417~442쪽.  
 박훈일, 「농업 협동 조합 규약은 조합 생활의 기본이다」, 『인민』 1954년 10호, 94~103쪽.  
 서홍석, 「북한 농업협동화 시기 제대군인의 활동과 농업협동조합의 공고화」, 『한

- 국사학보』 74집, 2019, 375~418쪽.
- 이영훈, 「북한의 경제성장 및 축적체제에 관한 연구(1956~64년): Kaleckian CGE 모델 분석」,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2000.
- 이주철, 「1950년대 북한 농업협동화의 곡물 생산성과 연구」, 『韓國史學報』 31집, 2008, 205~240쪽.
- 장미성, 「농업협동화 시기 농민의 일상과 내면 연구: 전후 1950년대 북한 소설을 중심으로」, 『學林』 30집, 2009, 69~133쪽.
- 정진아, 「사회주의가 북한 어민의 풍습과 노동관행에 미친 영향」, 『사학연구』 118집, 2015, 355~390쪽.
- 조수룡, 「전후 북한에서의 소련계 숙청과 국적 문제(1954~1958)」, 『동북아역사논총』 56호, 2017, 246~287쪽.
- \_\_\_\_\_, 「북한의 전후 복구 3개년계획(1954~56) 수정과 1955년 봄 식량 위기」, 『한 국민족운동사연구』 97집, 2018, 245~278쪽.
- \_\_\_\_\_, 「정전 후 북한의 사회주의 개조와 민간 상업의 몰락」, 『역사비평』 127호, 2019, 351~380쪽.
- \_\_\_\_\_, 「정전 후 북한에서 사회주의 이행 논의와 정식화」, 『한국사연구』 190집, 2020, 307~340쪽.
- 이준희, 「1950년대 ‘신해방지구’ 개성의 농업협동화: 10월농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37호, 2017, 481~517쪽.
- \_\_\_\_\_, 「1950년대 북한의 사회주의 상업과 ‘옥심상점」, 『민족문화연구』 85권, 2019, 527~556쪽.

Chen, Shuo and Lan, Xiaohuan, “There Will Be Killing: Collectivization and Death of Draft Animals,” *American Economic Journal: Applied Economics*, 9(4), 2017, pp. 58-77.

『로동신문』

АВПРФ, ф. 0102, Итоги кооперирования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в КНДР(Справка, май 1955 год)

АВПРФ, ф. 0102,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Совета Министров СССР по внеш

им—экономическим связям Отдел по экономике стран Востока, Развитие экономики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борник(1957)

АВПРФ, ф. 0102, Мероприят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НДР по исправлению положения, сложившегося в результате ошибок в области экономики(сентябрь 1955 год)

АВПРФ, ф. 0102, Отдел с/х ЦК ТПК, Некоторые предложения по дальнейшему развитию и укреплению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кооперативов

АВПРФ, ф. 0102, Положение в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кооперативах КНДР/справка/(1957. 10. 16.)

АВПРФ, ф. 0102, оп. 9, п. 49, д. 57,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е положение КНДР(Справка, декабрь 1953 г.)

АВПРФ, ф. 0102, оп. 10, п. 52, д. 8

АВПРФ, ф. 0102, оп. 10, п. 52, д. 9

АВПРФ, ф. 0102, оп. 10, п. 58, д. 50, Сельское хозяйство КНДР

АВПРФ, ф. 0102, оп. 10, п. 58, д. 50, Справка о положении в КНДР(1954. 12. 18)

АВПРФ, ф. 0102, оп. 11, п. 60, д. 7

АВПРФ, ф. 0102, оп. 11, п. 60, д. 8

АВПРФ, ф. 0102, оп. 13, п. 72, д. 5

АВПРФ, ф. 0102, оп. 14, п. 75, д. 7

АВПРФ, ф. 0102, оп. 14, п. 75, д. 8

АВПРФ, ф. 0102, оп. 17, п. 26, д. 5

РГАНИ, ф. 5, оп. 28, д. 189

РГАНИ, ф. 5, оп. 28, д. 190

РГАНИ, ф. 5, оп. 28, д. 412

Between Spontaneity and Compulsion:  
A Review of North Korean Agricultural Collectivization  
in the 1950s

Jo, Soo-Ryong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Abstract

This study reviews the process of agricultural collectivization in North Korea during the 1950s, using reports and statistical data prepared by the Soviet Embassy in Pyongyang. Particular attention is paid to the background and character of collectivization in North Korea, which was carried out at an unprecedented speed. This has to do with the voluntary or coercive aspects of grouping. The so-called popular stage of agricultural collectivization began in the summer of 1954. Its purpose was to secure stable food rations and labor supply for industrialization.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Korean Workers' Party emphasized the principle of volunteerism, but it was not followed. Middle-class and wealthy peasants, who were forced to join agricultural cooperatives, slaughtered or sold their livestock. Faced with a food crisis, the KWP entered an adjustment period that limited the quantitative growth of agricultural cooperatives from the second half of 1955, but soon returned to a radical policy. Only after the political crisis of August-September 1956 eliminated the minority within the party and the re-establishment of relations with the Soviet Union, collectivization was able

to proceed smoothly without internal external disturbances. In North Korea, it can be said that the collectivization of agriculture was not much different from the way of expropriating middle-class and wealthy peasants to finance industrialization, following Preobrazhensky's theory of primitive socialist accumulation.

Keywords: North Korea, agricultural collectivization, agricultural cooperatives, slaughter of livestock, food crisis, industrialization

조수룡(Jo, Soo-Ryong)

---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한국 현대사를 전공했고, 북한사와 동아시아 냉전사의 여러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 최근 연구로는 「북한의 제1차 5개년계획(1957~61) 초안과 탈소련화의 개시」(2021), 「해류, 명태 그리고 NLL: 동해 명태 회유로의 이동과 남북한 냉전」(2020), 「정전 후 북한에서 사회주의 이행 논의와 정식화」(2020) 등이 있다.